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27호서식] <신설 2017. 9. 20.>

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[ ] 등록 [ ] 변경등록 확인서

1. 공동농업경영체 지정 등록번호				
	최초등록일자		최종수정일자	
2. 공동농업경영체 (법인명 및 대표자)	공동농업경영체명			
	대표자		전화번호	
	사무소 소재지			
	법인등록번호			
	사업자등록번호			
3. 공동경영 면적(ha)		4. 참여 농업경영체 수(호)		

5. 출자규모	구분	계	농업인	비농업인
	출자자 수(명)			
	출자액(만원)			

6. 농산물의 생산·유통 현황

주요품목명	재배면적	생산량	판매량	판매금액

7. 가축 사육 현황

사육품목		사육규모	

위 경영체는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의4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를 [ ] 등록 [ ] 변경등록)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직인

※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, 등록된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거나 전화(000-0000-0000)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.
※ 본 경영체 등록정보는 공동농업경영체가 자율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등록된 정보로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■ 문의처: ☎ 000)0000-0000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]